

행정처분·경영지도·경영관리·적기시정조치

1. 조치 대상 법인명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 행정처분 등의 종류	경영개선요구
3. 행정처분 등의 근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7조(경영개선요구)
4. 행정처분 등의 원인	2024년 9월말 기준 경영실태조사 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
5. 행정처분 등의 내용	경영개선요구
6. 기타	-

기재상의 주의

주1) 저축은행법 제24조(행정처분), 제24조의2(경영지도), 제24조의3(경영관리)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제14조(행정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주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주3) 기타 법규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 적기시정조치 :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